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72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이달희 · 강선영 · 안철수
최보운 · 김상훈 · 박충권
김성원 · 고동진 · 김은혜
서천호 · 주호영 · 강명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본문 중 “第7項의 規定”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第8項의 規定”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0항) 중 “第7項의 規定”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1항) 중 “第7項의 規定”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2항) 본문 중 “第3項 但書의 規定”을 “제5항 단서”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第3項의”를 “제5항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u> (생 략) <u><신 설></u>	<u>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u> (현행과 같음)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다.</u> <u>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u> <u>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u> <u>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u>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u>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u>

증명하는 書類와 本人承諾書
및 住民登録票 抄本을 첨부하
여 書面으로 제출한다. 다만,
國會議員選舉權이 있는지의 여
부에 대하여는 中央選舉管理委
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調査할 수 있다. 이
경우 "黨部"라 함은 政黨法 第
3條의 規定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
해 黨部가 없을 때에는 그 上
級 黨部가 추천한다.

⑨ 政黨推薦委員에 缺員이 생
긴 때에는 關係選舉管理委員會
는 第8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黨部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國會議長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交渉團體를 구성된 政黨
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이를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통보하
여야 하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는 당해 政黨과 그 下級選舉管
理委員會에 이를 즉시 통지하
여야 한다.

⑪ 第7項의 規定에 따라 委員
을 추천한 政黨이 國會에 交渉

-----.

-----.

-----.

⑪ -----

-- 제7항-----
-----.

⑫ ----- 제9항-----

-----.

⑬ 제9항-----

團體를 구성할 수 없는 政黨이 되고 새로 交渉團體를 구성하게 된 政黨이 있는 경우에는 그 政黨에서 추천한 者가 委員으로 위촉될 때까지 在任한다.

⑫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期間開始日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 후에 당해 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政黨推薦委員의 推薦書를 접수한 때에는 第3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24時間 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時間 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이를 위촉하고 각 上級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직전에 交替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2日 전에 당해 政黨의 交替推薦이 있어야 하며 投票日 또는 開票期間중에는 이를 交替할 수 없다.

⑬ (생략)

第5條(委員長) ① ~ ③ (생략)

[illegible]

⑭

제5항 단서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⑮ (현행 제13항과 같음)

第5條(委員長) ① ~ ③ (현행과)

